 국토교통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일시	2018. 8. 1(수) / 총 6매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 과장 고용석, 사무관 허원석, 주무관 남익용 ☎ (044) 201-3574, 3575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현장 폭염 대응 관련 조치현황

1. 그간 조치내용

□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폭염대응 현장관리 요청 및 지침 시달

☞ **VIP 지시(7.24, 국무회의)** :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대응, 이제 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할 필요

- (1차) “폭염특보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7.17, 소속 및 산하기관)
- (2차) “폭염대응 건설현장 관리 철저 재요청”(7.24,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 (3차) “공기연장 조치 등 지침* 시달”(7.25,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 각 발주청은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조치

- 1차관남, 폭염대비 건설현장 점검(7.27, LH 의정부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2. 금일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공문 지시(공사중지)

□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관련 협회, 긴급 유선 지시 병행)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민간공사)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요청. (국토부→ 지자체)

<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8.1)>

-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지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남익용 주무관(☎ 044-201-35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배포) 2018. 8. 1(수)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전창현, 사무관 김세필 (044-200-2346, 2348)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일(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농어민 등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동안 낮 시간대 작업을 하지 말도록 적극 안내할 것.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관련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1. 건설안전과-5461호(2018.7.17.), 5577호(2018.7.24.), 5600(2018,7,25) 및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2018.8.1)** 관련입니다.
2.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니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 지자체에서는 민간 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붙임.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특별시 시장, 부산광역시 시장, 인천광역시 시장, 대구광역시 시장, 울산광역시 시장, 대전광역시 시장, 광주광역시 시장, 강원도 지사, 경기도 지사, 충청북도 지사, 충청남도 지사, 전라북도 지사, 전라남도 지사, 경상북도 지사, 경상남도 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건설 안전 과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75 팩스번호 044-201-5553 / iynam23@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참고3

법적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6호 생략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